

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·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

2019. 11. 26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32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. 11. 15.(금)
- 라. 회부일자 : 2019. 11. 15.(금)

2. 제안이유

2018년 자치법규 정비과제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시민감사관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성별 형평성 증진과 여성 취약 분야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민감사관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함(안 제4조제1항)
- 나.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은, 해당 법의 적용 범위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(법 제3조제1항)되어 있으므로 명예직 위원에 해당하는 시민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, 해당 내용 삭제(안 제6조제2항)

다.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민·형사상 책임의 문제는 민·형사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고,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경우에는 ‘법률’에서 규정하여야 하므로,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해당 내용 삭제(안 별지 제1호서식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제3조, 제29조 및 제4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이유

○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법제처 협업과제로 우리 구 조례가 연내 정비해야 할 자치법규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성별 균형을 위한 근거를 추가하는 등 시민감사관 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**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대상내역 반영** (안 제6조제2항 및 안 별지 제1호서식)
 - 시민감사관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은, 명예직 위원에 해당하는 시민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내용 삭제
 - 별지 제1호서식 중 민·형사상 책임의 문제는 민·형사법령에 따라야

할 것이고,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해당 내용 삭제

○ **시민감사관 구성 시 성비 균형을 위한 근거 마련** (안 제4조제1항)

- 성별 형평성 증진과 여성 취약 분야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민감사관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함.

○ **정식 명칭 사용 및 띄어쓰기 교정**

- 별지 제1호서식 중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금천구민”으로, “해축∨후∨라도”를 “해축∨후라도”로 변경

다. 검토결과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대상내역을 반영하여 시민감사관에게 적용되지 않는 해당 사항을 삭제하고 시민감사관 구성 시 성비 균형을 위한 근거 마련하여 시민감사관 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련 법령 1부.
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[약칭 : 공공감사법]

[시행 2017. 7. 26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, 타법개정]

제3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이하 "중앙행정기관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제33조,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67조에 따른 위임사무의 감사, 같은 법 제171조에 따른 자치사무의 감사 및 「물품관리법」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중 "감사기구의 장"은 "중앙행정기관등의 장"으로 본다.

제29조(비밀유지 의무)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0조(벌칙) 제2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참 고 자 료

서울시 자치구 시민감사관 조례제정 현황

조례제정 여부	자치구
조례 제정	9개 자치구

연번	자치구	조례명	비 고
1	금천구	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	
2	강동구	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	
3	도봉구	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	
4	동대문구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	
5	성동구	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	
6	성북구	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	
7	영등포구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	
8	은평구	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	
9	종로구	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	